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 전파감시(Radio Spectrum Monitoring)
-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
- 국내·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무선국 허가·검사
- 방송국 검사
- 통신사업자 등록·신고
-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
-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
- 불법감청설비 조사
-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 방송편성비율 확인
-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

전파 이용 촉진

-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
- 전파혼신 조사
- TV 수신환경 조사
-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
- 위성 전파환경 조사



국제 교류 협력

- 인접국간 전파관리 협력
- 국제 표준화 활동
-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기술 교류 및 연구 지원

- 전파통신 기술 지원
-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 emsit.go.kr
민원상담 : 080-700-0074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08249)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02-2680-1700
-서울북부사무소	(11604)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152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35283)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00
-당진사무소	(31754)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대한민국 전파 · 방송통신의 중심 중앙전파관리소

간이 무선국 허가·신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간이무선국에 대해 알아볼까요?

간이무선국은 크게 휴대용 간이무선국과 고정용 간이무선국으로 구분됩니다.

휴대용 간이무선국

개념 휴대용 간이무선국이란, 간단한 업무 연락용으로 휴대하여 들고 다니며 통신을 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입니다.

무선국 검사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개설신고 시 무선국 준공 및 정기 검사가 면제됩니다.

고정용 간이무선국

개념 고정용 간이무선국이란, 간단한 업무 연락용으로서는 휴대는 하지 않고, 일정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이며,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차량용 등이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개설허가 시 무선국 준공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이용 불편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고객센터로!
☎ 080-700-0074



간이무선국의 개설 등 안내

간이무선국의 개설 및 유효기간

휴대용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개설신고의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별도 갱신(재허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정용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개설허가의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허가 기간 중에 허가갱신(재허가)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 허가 대상 무선국은 면허세 부과 대상으로서, 연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전파사용료

휴대용 및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1국당 분기별 3,000원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며, 일시납(1년: 4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 전파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 발생 및 행정처분 (허가 · 신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휴지 및 폐지

휴지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1회 신청시 최대 1년 휴지가 가능하며, 휴지 신청이 없으면, 사용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폐지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아날로그의 경우, 무선국 폐지 시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재신청 불가

기타 유의사항 안내

디지털 전환정책

2019. 1. 1.부터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의 신규 개설 신고 및 허가가 제한됩니다.

※ (참고) 기존 신고 · 허가된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에 대해서는 기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되며, 허가 갱신(재허가) 및 지위승계 또한 가능

부관사항

부관사항이란, 법령에서 정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령 등의 저촉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부관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무선설비 해외 구매

무선설비를 해외에서 직접 또는 대행 구매 시 국내 기술 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만이 허가 및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해외에서 유통되는 무선설비를 구매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참고) 1인 1개의 무선설비는 비인증기기라도 통관이 가능하나, 국내 기술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시 허가 및 신고 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 crr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msit.go.kr
전파 · 방송통신민원 : 080-700-0074